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547 발의년월일: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:임만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정태, 김기덕, 김화숙, 경만선,

최기찬, 이광호, 김경영, 황규복,

봉양순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서울시의 전반적인 민간전문가 운영사항을 규정한「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도 불구하고, 서울건축문화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이 조례에서 서울시장에 재량을 주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민간전문가 위촉방법, 업무범위, 대가지급 등 민간전문가 위촉 및 운영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13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, 제14조, 제15조를 각각 제14조, 제15조, 제16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(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)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 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- 1. 건축분야 전문가
- 2. 전시예술분야 전문가
- 3. 디자인분야 전문가
-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신 설>	제13조(건축문화제 총감독 등 운영) ① 시장은 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. 1. 건축분야 전문가 2. 전시예술분야 전문가 3. 디자인분야 전문가 ② 총감독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며, 업무범위 및 대가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제13조(사업의 지원) ① ~ ④ (현 행과 같음) 제14조(수당과 여비)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사무의 위탁) ① ~ ② (현 행과 같음)	 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 제14조(사업의 지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5조(수당과 여비)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사무의 위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